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07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 의 자 : 정동만 · 박성민 · 이상희
김성원 · 윤영석 · 추경호
김용태 · 박형수 · 김위상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현행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호 단서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총매출액 대비 농수산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수산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또는 설치한 자 중 제4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 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4조(적용 배제) ----- -----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 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 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 센터 <단서 신설>	1. ----- ----- ----- ----- -----. <u>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u> <u>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u> <u>니한 곳으로서 연간 총매출액</u> <u>대비 농수산물(「농수산물 유통</u> <u>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u> <u>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u> <u>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u> <u>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u> <u>인 곳은 제외한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농수산물

물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